

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(2007.06.30)  
및  
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(2013)에 관한

상설중재재판소  
사건번호 2018-51

엘리엇 어소시엣 엘.피. (미국) (ELLIOTT ASSOCIATES, L.P. (U.S.A.))  
(이하 “청구인”)

대한민국

(이하 “피청구국”)

(“청구인” 및 “피청구국”의 집합은 “당사자들”로 칭한다.)

---

절차 명령 제 5 호

---

중재판정부

Dr. Veijo Heiskanen (의장중재인)

Mr. Oscar M. Garibaldi

Mr. J. Christopher Thomas QC

사무국

상설중재재판소

2019 년 8 월 26 일

## I. 재판 경과

1. 2019 년 5 월 14 일, 중재판정부는 현 중재재판의 절차 시간표를 결정하는 절차 명령 제 2 호를 발령했다. 절차 명령 제 2 호는 피청구국의 관할 또는 청구적격 관련 이의 제기 여부, 동 이의제기의 근거 및 재판의 본안 전 단계에서 동 이의제기를 다룰 것인지의 여부에 준하여 재판 절차 관련 4 개의 대안적인 트랙을 숙고하였다.
2. 2019 년 8 월 22 일, 피청구국은 절차 시간표에 관한 다수의 수정사항 및 반박서면의 제출기한을 2019 년 8 월 30 일에서 2019 년 9 월 27 일로 연장하도록 청구인과 합의하고, 중재판정부에 동 연장의 승인을 요청하였다.
3. 동 서면에서, 피청구국은 반박서면을 통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관할권 또는 기타 이의제기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현 재판의 절차 분리를 요청하지 아니할 것을 확정하였다.

## II. 중재판정부의 결정

4. 상기를 고려하여 중재판정부는 다음을 결정한다:
  - (a)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수정 절차 시간표를 확인 및 승인한다;
  - (b) 중재판정부는 나아가 관할 및 기타 이의제기의 권리를 유보하되 재판의 절차 분리를 청하지 아니하겠다는 피청구국의 결정을 확인한다; 및
  - (c) 재판은 현 절차 명령의 부속서에 재 명시된 수정 시간표에 따라 진행된다.

중재지: 영국 런던

(서 명)

---

Dr. Veijo Heiskanen  
(의장중재인)

중재판정부 대표

부 속 서

1 단계: 제 1 차 서면제출		
수정 청구서면	청구인	2019 년 4 월 4 일
반박서면 (및 모든 본안 전 이의제기)	피청구국	2019 년 9 월 27 일
2 단계: 문서제출 및 비분쟁 당사자의 서면제출		
문서제출 요청	당사자들	2019 년 11 월 1 일
문서제출 관련 이의제기	당사자들	2019 년 11 월 22 일
이의제기 관련 답변 (중재판정부에 제출)	당사자들	2019 년 12 월 13 일
자발적 문서제출	당사자들	2020 년 1 월 6 일
비분쟁 당사자의 협정 제 11.2(4)조에 따른 서면제출 의사 표시	미국	2020 년 1 월 6 일
이의제기 관련 중재판정부의 결정	중재판정부	2019 년 1 월 10 일
자발적 문서제출 종료 및 비자발적 문서제출	당사자들	2020 년 2 월 7 일
비분쟁 당사자의 협정 제 11.20(4)조에 따른 서면제출	미국	2020 년 2 월 7 일
3 단계: 제 2 차 서면제출		
재주장서면 (및 해당하는 경우 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답변서)	청구인	2020 년 6 월 7 일
재반박서면 (및 해당하는 경우 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재주장서면)	피청구국	2020 년 9 월 7 일
(해당하는 경우 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청구인의 재반박서면)	(청구인)	(2020 년 10 월 29 일)
4 단계: 심리		
반대신문 대상 증인 및 전문가 통지	당사자들	2020 년 11 월 23 일
심리 전 회의	전원	2020 년 12 월 7 일
심리	전원	2021 년 1 월 25 일 및 2 월 1 일 주간